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자유민주주의를 기르는
혁신미래교육

주요업무보고



2020. 6.

서울특별시교육청

1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2 사업 개요

- 목적
 -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 및 협력 활성화 여건 조성
 -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한 통일 기반 조성과 한반도 평화 정착
- 근거
 - (주요업무) 3-1-1. 화해와 공존의 평화·역사·통일교육
 -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2019.7.18.)
- 주요 내용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추진

2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참고자료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연중	1단	8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연중	1단	8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운영	6월~12월	1,000,000천원	10쪽
남북교육교류협력기반 조성 사업 추진	연중	학생, 교원 200명	.

2] 추진 계획

'20년 주요 개선 사항

- 남북교육교류협력 추진을 위한 위원회 구성 및 기금 조성
 - 남북 관계를 반영한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당연직(부교육감, 국장) 포함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
 - (임기) 2년(당연직 재직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역할) 남북교육교류협력 및 기반 조성, 행·재정적 지원 사항 심의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사항 심의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당연직(부교육감, 국장) 포함 위촉직 위원 7명
 - (임기) 2년(당연직 재직기간,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
 - (역할)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조성·운용
 - (목적)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의 안정적·단계적 추진 기반 마련
 - (용도) 협력사업 필요 자금 지원,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경비 지출
 - (대상)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법인, 단체, 개인
 - (조성) 7억원 ~ 10억원
 - (운용) 북한체험학습,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추진
 - (목적) 남북교육교류협력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 함양
 - (대상) 200여 명(초·중·고 학생 및 교원, 관계자 등)
 - (내용) DMZ 사제동행 평화캠프, 타 부서 연계 기반 조성 사업 추진

2] 추진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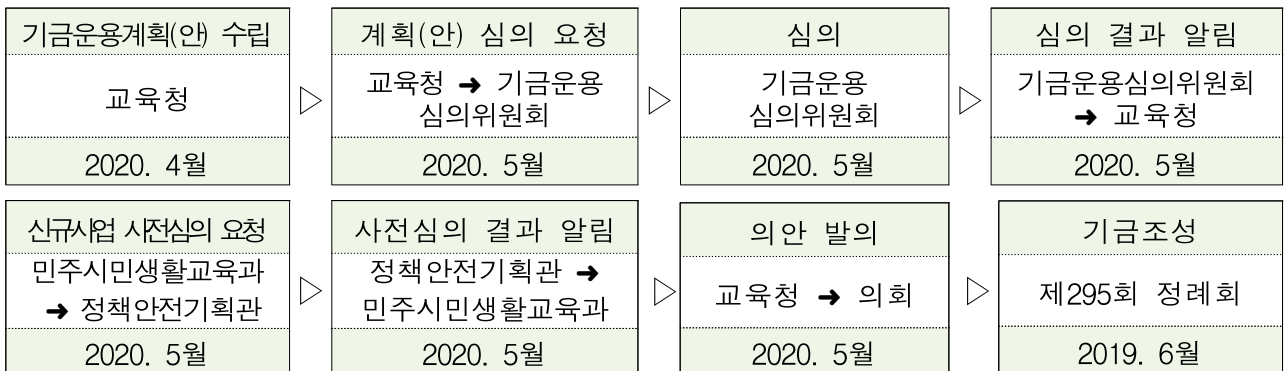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총 15명
- (운영) 제1차 회의 및 위촉식 개최(서면): '20. 4월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구성) 총 7명
- (운영) 제1차 회의 및 위촉식 개최(서면): '20. 4월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운용계획(안) 심의: '20. 5월



2] 향후 추진 일정

- 제2차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개최: '20. 9월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필요시
-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추진: '20. 8월~12월

2]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작성기준일: '20.6.1.)

사업명	'20 예산			'19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위원회 구성·운영	2,400	0	2,400	10,000	0 (00.00)	0 (00.00)	※코로나19로 서면심의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사업	50,000	0	50,000	190,000	0 (00.00)	0 (00.00)	
계	52,400	0	52,400	200,000	0 (00.00)	0 (00.00)	

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2] 사업 개요

- 목적: 평화감수성과 민주시민의식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역량 함양
- 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2020.5.16.)
- 주요 내용
 - 교육과정 연계 학생 체험·참여 중심 동아리 활동 지원
 - 교원 역량 강화를 위한 현장 체험 연수(워크숍), 프로젝트 수업,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원학습공동체 등 지원
 - 평화감수성 수업모델 개발을 위한 통일교육연구학교 선정·지원

2]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시기	물량	참고자료
학생체험 동아리 운영·지원	연중	30교	9쪽
현장체험 교원연수(워크숍) 운영	연중	4회	·
프로젝트 수업 실천 지원	연중	30교	9쪽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연중	10팀	·
교수·학습 자료 개발	연중	초·중·고 3종	·
통일교육연구학교 선정·지원	연중	3교(초2교, 중1교)	9쪽

2] 추진 계획

'20년 주요 개선 사항

- 학생 체험·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평화·통일 실천 역량 함양
 - 체험 동아리 지원 확대: '19년 25교 → '20년 30교
-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 현장 체험 교원연수(워크숍) 확대: '19년 3회 → '20년 4회
 - 논쟁형 프로젝트 수업 지원 신설: '20년 30교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지원 확대: '19년 3팀 → '20년 10팀
 - 교수·학습 자료 제작: '20년 초·중·고 3종(신규)
- 교육과정 연계 통일교육연구학교 지원 확대: '19년 2교 → '20년 3교

○ 학생 체험 동아리 운영 지원

- (목적) 학생 참여·체험 중심 동아리 활동을 통한 미래세대 통일역량 함양
- (기간) 2020. 3월~12월
- (대상) 초·중고 중 희망교
- (내용) 평화통일 현장 체험, 탐구, 조사, 공연, 캠페인, 체험부스 등 운영
※ 학생이 기획하고 주도하는 평화·통일 주제 신문 발간, 뉴스 제작, 캠페인, UCC 제작·발표, 독서토론, 현장 체험, 교내 행사와 연계한 홍보활동 등

○ 현장체험 교원연수(워크숍) 운영

- (목적) 교원의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 및 전문성 함양
- (기간) 2020. 3월~12월
- (장소) DMZ 평화누리길 일대(4월), 북중러 접경 지역 연수(8월)
평화통일교육 나눔 한마당 워크숍(6월, 11월/ 2회)
- (대상) 초·중고 중 희망교원
- (내용) 남북(북중)접경지역 현장 체험, 운영사례 나눔 및 발전방향 모색

○ 논쟁형 프로젝트 수업 지원

- (목적) 교육과정 연계 평화·통일교육 프로젝트 수업 활성화
- (기간) 2020. 3월~12월
- (대상) 초·중고 중 희망교
- (내용) 평화·통일 주제 프로젝트 수업 및 교과 간 융합 수업 실천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 (목적) 평화통일교육 공동 연구·협력적 실천을 통한 교원 역량 강화
- (기간) 2020. 3월~12월
- (대상) 초·중고 교원 5~10명 내외 (1인 1팀만 신청 가능)
※ 학교급별 혼합팀 구성 또는 동일 학교급 교원 간 구성
- (내용) 교육과정 연계 학생 참여·체험 중심 교과융합 프로젝트 수업 실천, 평화감수성 기반 평화·통일교육 모델 공동 연구 및 실천

○ 교수·학습 자료 제작·보급

- (목적) 교수학습 자료 개발보급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 (기간) 2020. 4월 ~ 2020. 2월
- (제작) 초·중·고 학교급별 각 1종(총 3종)
- (내용) 평화통일 주제 사회현안 논쟁형 프로젝트 교수학습 자료로써 문제 제기형 동영상 자료 개발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 (목적)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평화통일교육 실천 모델 개발 및 일반화
- (기간) 2020. 3월 ~ 2022. 2월(2년)
- (대상) 초·중·고 중 희망교
- (내용) 맞춤형 통일교육 실천 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의 타당성·적합성 검증
교육과정 연계 ‘평화교육 모델’ 개발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및 확산

2 추진 실적

- 학생 체험 동아리 운영 지원: 30교 선정(초7교, 중8교, 고15교)
 - 교당 2,000천원 지원, 총 60,000천원
- 논쟁형 프로젝트 수업 지원: 30교 선정(초14교, 중8교, 고8교)
 - 교당 2,000천원 지원, 총 60,000천원
- 학교 간 교원학습공동체 운영 지원: 10팀(학교급, 학교간 혼합 구성)
 - 교당 2,500천원 지원, 총 25,000천원(서울특별시교육연구정보원 지원)
- 교수·학습 자료 제작: 초·중·고 3종 동영상 제작
 - 개발진·검토진 구성(총 13명), 아이템 제작 회의: '20. 5월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지원: 3교(초2교, 중1교)
 - 교당 14,000천원 내외 지원(통일부 지원)

2] 향후 추진 일정

- 교수·학습 자료 제작 및 현장 적용: '20년 6~12월
- 교원 연수 및 워크숍, 체험동아리, 프로젝트 수업, 교원학습공동체, 연구학교 운영: '20년 6~12월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변경, 축소 운영 가능

2]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작성기준일: '20.6.1.)

사업명	'20 예산			'19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비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학생체험 동아리	60,000	-	60,000	60,000	60,000 (100.0)	60,000 (100.0)	
현장체험 교원연수	75,000	25,000	100,000	45,000	0 (00.00)	0 (00.00)	※코로나19로 예산 집행의 어려움
평화통일교육 워크숍	-	9,000	9,000	-	0 (00.00)	0 (00.00)	
프로젝트수업 실천 지원		60,000	60,000	-	60,000 (100.0)	60,000 (100.0)	
교원학습공동체	-	-	-	-	-	-	※연구정보원 예산 지원
교수·학습 자료 개발	-	21,000	21,000	-	850 (4.05)	850 (4.05)	
연구학교 선정·지원	-	-	-	-	-	-	※통일부 예산 지원
	135,000	115,000	250,000	105,000	120,850 (48.34)	120,850 (48.34)	

2] 문제점 및 애로 사항

-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사업 추진 여부 불투명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학교 대상 사업 조정 필요
 - 사업 추진 시기와 방식 조정, 규모 축소 등 필요



참고자료1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비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 영 철	당연직
2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 정 흠	당연직
3	서울특별시교육청	초등교육과 장학관	이 미 경	위촉직
4	서울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김 영 선	위촉직
5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의장	황 인 구	위촉직
6	숙명여자대학교	교 수	이 기 범	위촉직
7	서울대학교사회과학대학	선임연구원	강 주 원	위촉직
8	(전) 현대아산	(전) 전 무	임 태 빈	위촉직
9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	김 진 향	위촉직
10	하자센터	부소장	황 윤 옥	위촉직
11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성 현 국	위촉직
12	창덕여자중학교	교 장	유 인 숙	위촉직
13	경인고등학교	교 감	정 순 미	위촉직
14	서울연희초등학교	교 감	김 달 호	위촉직
15	동북고등학교	교 사	강 방 식	위촉직

□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연번	소속기관	직위	성명	비고
1	서울특별시교육청	부교육감	김 영 철	당연직
2	평생진로교육국	평생진로교육국장	백 정 흠	당연직
3	서울특별시의회	남북교류협력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황 인 구	위촉직
4	(전) 현대아산	(전) 전무	임 태 빈	위촉직
5	서울특별시교육청	대외협력비서관	성 현 국	위촉직
6	창덕여자중학교	교 장	유 인 숙	위촉직
7	서울연희초등학교	교 감	김 달 호	위촉직



참고자료 2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현황

□ 학생 평화·통일체험 동아리 지원: 30교

○ 최근 3년간 지원 현황

구분	2018	2019	2020
학교수	20교	25교	30교

○ 2020학년도 선정교 현황

구분	학교수	해당학교명
초	7교	구로남초, 당현초, 문래초, 백운초, 장평초, 청량초, 화양초
중	8교	가산중, 고대사대부중, 동덕여중, 세화여중, 신화중, 염창중, 중평중, 효문중
고	15교	강서고, 경성고, 광신예술정보고, 광영고, 등촌고, 선정국제관광고, 성남고, 세그루패션디자인고, 세현고, 신현고, 영일고, 오산고, 정신여고, 진명여고, 청원여고

□ 평화·통일 프로젝트 수업 지원: 30교 (2020년 신설)

구분	학교수	해당학교명
초	14교	문현초, 상원초, 석촌초, 신당초, 신목초, 신월초, 언북초, 영등포초, 영화초, 월정초, 잠신초, 향동초, 화곡초, 흑석초
중	8교	고덕중, 고대사대부중, 개운중, 대광중, 대원국제중, 덕수중, 목일중, 신화중
고	8교	강서고, 금호고, 덕원여고, 동덕여고, 서서울생활과학고, 서울외국어고, 영등포공고, 효문고

□ 통일교육연구학교 운영 : 총 3교

연번	종류	연구영역	연구과제	소속청	학교명	연차
1	시범	통일교육	평화감수성 배양을 통한 통일교육 실천 모델 개발	강동송파	석촌초	1/2
2				강남서초	언북초	1/2
3				강서양천	공항중	1/2



참고자료3 2020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의안 번호	1528
----------	------

제출연월일 : 2020년 5월 25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1.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및 제8조의2(성인지기금운용계획서 작성),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규정에 따라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을 수립·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 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0	1,000,000	353,600	646,400	0	646,400

※ 집행(사용)계획은 남북관계,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취소 또는 변경될 수 있음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11쪽 참조
 -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5호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제8조의2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
- 시도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조성 현황: 12쪽 참조

- 붙임 1.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2.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세부 사업 계획(안)

2020년도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계획(안)

I. 기금 운용 총칙

1. 기금 설치 개요

- 설치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 설치목적: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민의 남북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
- 설치년도: 2020년(신규)

2. 기금 운용의 기본 방향

가. 기금 사업의 목표

- 지속가능한 남북교육교류협력을 통해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한반도 공동 번영, 평화통일 선도

나. 2020년 기금 사업 개요

- 남북 교육 상호 발전 및 신뢰 구축, 민족동질성 회복을 위한 교육·학예 분야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인적교류 등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추진

다. 기금 조성·운용 주요 내용

1) 기금 조성 총 규모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 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e)	총규모(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0	1,000,000	353,600	646,400	0	646,400

2) 기금 조성 재원별 현황

-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수입 등

3) 지원 대상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법인, 단체 또는 개인

4) 지원 기준

- 북측과 교류협력 사업 합의 및 통일부 승인을 통한 추진
- 기금 설치 목적과 부합 정도 및 사업 내용, 사업비 적정성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후 추진

라. 기금 자산 관련 주요 현황

(단위 : 천원)

자산구분	'19년말 잔액(a)	'20년 계획안			증감 (b-a)
		신규	처분	잔액(b)	
합 계	0	1,000,000	353,600	646,400	646,400
금융자산	0	1,000,000	353,600	646,400	646,400
예치금	0	1,000,000	353,600	646,400	646,400

II. 자금 운용 계획

1. 자금 수지 총괄

(단위 : 천원)

수입 계획				지출 계획			
수입항목	'20년수입액	'19년수입액	증감	지출항목	'20년지출액	'19년지출액	증감
합 계	1,000,000	0	1,000,000	합 계	1,000,000	0	1,000,000
교특회계 전입금	1,000,000	0	1,000,000	비용자성 사업비	353,600	0	353,600
이자수입	0	0	0	기본경비	0	0	0
예치금 회수	0	0	0	예치금	646,400	0	646,400

2. 수입 계획

(단위 : 천원)

수입과목				산출기초	'20년 수입액 (A)	'19년 수입액 (B)	증감 (A-B)
장	관	항	목				
50000 내부거래							
51000 전입금							
51100 전입금							
5102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 교육비특별회계 1,000,000	1,000,000	0	1,000,000
20000 자체수입							
24000 이자수입							
24100 이자수입							
24101 예금이자수입				• 이자수입	0	0	0
40000 기타							
42000 예치금회수							
42100 예치금회수							
42101 예치금회수				• 전년도 이월액	0	0	0
수입합계							

3. 지출 계획

(단위 : 천원)

지출계획					목	산출기초	'20년 지출액 (A)	'19년 지출액 (B)	증감 (A-B)
부	정	단	세	사업내역					
문	책	위	부						
유아 및 초중등교육									
교수-학습활동지원									
학생생활지도									
학생생활지도지원									
1.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가.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									
○북한체험학습추진*					210-01	50,000,000원×2회= 100,000	100,000	0	100,000
○위원회 참석 수당					210-06	70,000원×10명×4회= 2,800	2,800	0	2,800
○업무추진비					230-02	20,000원×10명×4회= 800	800	0	800
○남북교육교류국외여비					220-02	2,500,000원×10명×2회= 50,000	50,000	0	50,000
○남북교육교류사업**					320-01	200,000,000원×1식= 200,000	200,000	0	200,000
○예치금					710-04	646,400,000원×1식= 646,400	646,400	0	646,400
지출합계							1,000,000	0	1,000,000

*북한체험학습추진: 금강산 개성 등 북한 관광 재개 대비(교원 시전답사단 파견 및 학생 참여 시범 사업 추진)

**남북교육교류사업: 유관 기관 및 타부서 등과 협력하여 남북교육교류 사업 추진 및 지원

※ 남북관계, 코로나19 감염병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Ⅲ.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1. 성평등 목표

- 남녀 차별 없이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학생들의 통일의식 제고 및 남북 교육교류협력 활성화

2. 성인지 기금 운용 계획 작성 방향

- 남북교류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는 없으나, 학생 참여 사업 추진 시 특정 성에 치우치지 않고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3. 분류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사업 분류	사업개수	기금운용 계획액 (A)	전년도 계획액 (B)	비교 증감	
				(A-B)	증감률
합 계	1개	1,000,000	0	0	100%
1.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0개	0	0	0	0%
2. 성별영향평가사업	0개	0	0	0	0%
3. 자체선정사업	1개	1,000,000	0	0	100%

4. 기능별 총괄표

(단위 : 개, 천원)

부문·정책사업	사업분류			기금운용 계획액		전년도 계획액		비교 증감	
	1	2	3	(A)	구성비	(B)	구성비	(A-B)	증감률
합 계	·	·	1	1,000,000	100%	0	0%	1,000,000	100%
유아및초중등교육	·	·	1	1,000,000	100%	0	0%	1,000,000	100%
학생생활지도	·	·	1	1,000,000	100%	0	0%	1,000,000	100%

5. 사업별 설명자료

[세부사업명 : 학생생활지도지원]

사 업 명	북한지역 체험학습 추진(학생 체험학습)	
사업구조	(분 야) 교육	(부 문) 유아 및 초중등교육
	(정책사업) 교수-학습활동지원	(단위사업) 학생생활지도
성인지항목	(정책분야) 남녀평등 의식과 문화의 확산	(정책과제) 학교에서의 양성평등 교육 강화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북한지역 역사유적지, 교육기관, 생태환경 체험을 통한 민족동질감 및 통일의식 제고
 - 사업내용: 남북관계, 국제정세, 안전 확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 점진적 추진
 - 북한 지역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교원 사전 답사단 파견(50,000천원)
 - 학생 대상 북한지역 현장체험학습 추진(50,000천원)
- ※ 위 2가지 사업은 상황에 따라 사제동행으로 추진 가능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 대상 사업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	성별영향 평가사업	자체선정사업
		○

※ 해당되는 칸에 “○”표시

□ 소요 자원

(단위 : 천원)

재 원 별	계 획 액 (A)	전년도 계획액 (B)	비교 증감	
			금 액(A-B)	증감률
계	1,000,000	0	1,000,000	100%
교 특 회 계 전 입 금	1,000,000	0	1,000,000	100%
기 부 금	0	0	0	0%
용 자 금 회 수	0	0	0	0%
예 치 금 회 수	0	0	0	0%
이 자 수 입	0	0	0	0%
기 타	0	0	0	0%

□ **성별 수혜 분석**

-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관내 고등학생, 40명)

구 분		Y-3년	Y-2년	Y-1년
전체	사업대상자(A)	명	명	236,689명
	사업수혜자(B)	명	명	40명
	수혜율(B/A)	%	%	0.017%
여성	사업대상자(C)	명	명	115,414명
	사업수혜자(D)	명	명	20명
	수혜율(D/C)	%	%	0.017%
남성	사업대상자(E)	명	명	121,275명
	사업수혜자(F)	명	명	20명
	수혜율(F/E)	%	%	0.016%

※ 사업대상자는 시설물의 경우 등 사업(시설물 등)의 수혜지역 총 인원수 등을 기재하고 산정이 불가능한 사업은 “불특정 다수” 등으로 기재

※ Y-3~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 예산 구분

(단위 : 천원)

구 분	Y-3년 결산액	Y-2년 결산액	Y-1년 계획액
계			50,000
여성(비율) (D/B)	(%)	(%)	(50 %)
남성(비율) (F/B)	(%)	(%)	(50 %)

□ **성별 격차 원인 분석 및 대책**

- 남북교류의 특성상 사업의 내용 및 규모 등을 현 시점에서 특정할 수 없으나, 2020년 사업계획 중 학생 대상 북한지역 체험학습 추진 시 서울시교육청 관내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시범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며, 별도의 성별 기준은 없음

□ **성과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Y-2년 실적	Y-1년 추정치	Y년 목표치
균등기회 제공	성별수혜율격차			0

※ Y-2년은 집행실적, Y-1년은 집행실적 및 집행기준에 의한 추정치, Y년은 추정치

※ 기금운용계획의 성평등 목표와 연계하여 성과목표, 성과지표 설정

- 산출근거: (여성 사업 수혜자수 - 남성 사업 수혜자수)/전체 사업 수혜자수

□ **성평등 기대효과**

- 남녀 균등한 기회 제공으로 학생의 통일 실천 역량 함양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IV. 기금 운용 계획안 부속 서류

1.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조 성 액			집 행 액			잔액 (a-b)
	계(a)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	계(b)	비용자성 사업비	기타 지출	
2019	0	0	0	0	0	0	0
2020	1,000,000	1,000,000	0	0	353,600	0	646,400
계	1,000,000	1,000,000	0	0	353,600	0	646,400

2. 예치금 현황

(단위 : 천원)

예치은행	2019년도 현재액(a)	2020년도 현재액(b)	증감 (b-a)	비 고
농협중앙회	0	646,400	646,400	

2020년도 남북교육교류협력 기금 운용 세부 사업 계획(안)

평생진로교육국 민주시민생활교육과	담당 과 장 : 윤 여 복(3999-476)
담당장학관 : 손 동 빈(3999-542)	업무담당자 : 지 선 영(6973-9832)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0. 3. ~ 2020. 12.
- 사업근거: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2019.7.18. 제7214호)
- 사업목적
 - 남북교육교류협력으로 통일교육 활성화 및 점진적인 평화통일기반 조성

□ 사업내용

- 북한 지역 역사유적지, 교육기관, 생태환경 등 현장체험학습의 단계적 추진
- 북측 교육당국, 학교, 학생 대상 교육분야 교류협력 및 인도적 지원

□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기금명	'19년도 말 조성액(a)	'20년도 기금운용계획		'20년도 말 조성액(e) (d=a+b-c)	융자금 미회수채권 (e)	총규모 (f=d+e)
		조성계획(b)	집행계획(c)			
남북교육교류 협력기금	0	1,000,000	353,600	646,400	0	646,400

- 집행계획(c) 세부내역

사업 세부 내역	산출 기초	집행액(단위: 천원)
· 북한체험학습추진	50,000,000 원×2회 = 100,000,000 원	100,000
· 남북교육교류사업추진	200,000,000 원×1식 = 200,000,000 원	200,000
· 위원회 참석 수당	70,000원×10명×4회 = 2,800,000원	2,800
· 업무추진비	20,000원×10명×4회 = 800,000원	800
· 남북교육교류 국외여비	2,500,000원×10명×2회= 50,000,000원	50,000
합계		353,600

□ 주요사업 세부 추진 계획

1. 북한 지역 현장체험학습 단계적 추진

○ 목적 및 방향

- 북한 지역 현장체험학습을 통한 민족동질성 체득 및 평화통일 실천 역량 함양
- 사전답사 및 안전 확보 등을 통한 위험 요인 제거 및 교육 효과성 제고

○ 사업 개요

- 현장체험학습 추진을 위한 교원 사전 답사단 파견
 - 목 적: 체험학습 코스 및 프로그램 개발, 사전 안전 점검 등
 - 답사지: 금강산, 개성(공단), 평양 중 가능 지역 남북 협의 선정
 - 답사단 구성: 관내 교원 40명(공모를 통한 참여 교원 선발)
 - 교원 사전 답사(안) 예시

▷ 체험학습 코스 및 안전 상태 점검

- 교육적으로 유의미한 코스 확인 및 점검
- 위험 요소 점검 및 해결 방안 모색

▷ 개성 및 금강산 지역 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

- 개성공단 입주 업체 탐방 및 전문인력 수요 현황, 관련 기술 탐색
- 개성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 탐방
- 금강산 지역 생태 환경 보존 상태 확인 및 코스 개발

▷ 평양 역사문화 체험학습 프로그램

- 평양 내 고구려 유적지 등 역사교육 현장 탐방
- 평양 내 교육기관 및 과학, 문화 시설 탐방

- 학생 대상 현장체험학습 시범 추진

- 북한 지역 관광 재개 및 안전 확보 이후 추진
- 답사지: 금강산, 개성(공단), 평양 중 가능 지역 남북 협의 선정
- 대상: 관내 고등학생 40명(※ 상황에 따라 사제동행으로 추진 가능)

- 추진 일정(안)

- 교원 사전답사단 파견 및 남북 교육당국 간 협약 체결('20.하반기)
- 안전대책 마련 및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개발('20.하반기)
- 학생 대상 체험학습 시범 프로그램 추진('20.하반기)
- 현장체험학습 매뉴얼 보완('20.하반기)

○ 사업 예산: 금100,000천원(금일억원)

2.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 추진

○ 목적 및 방향

- 국제정세 및 남북 관계 불확실성, 교육당국 간 남북 교류 채널 미비 등으로 인해 기존 교류 채널을 활용한 사업 추진
- 유관 기관 및 부서간 협력을 통한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 및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

○ 사업 개요

- 대북교류협력 연계 사업 추진

- 관련 단체 사업 제안 및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사업 추진
- 사업의 적절성 및 타당성, 북측과의 협의 및 합의 정도 심사를 통한 지원
- 통일부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한 기금 집행 타당성 검토
- 기 편성된 총액(2억원) 내에서 사업별 예산을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금 운용 계획 변경을 통해 총액에 대해 증액 편성 가능
-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및 대한민국 소재 비영리 법인, 관련 단체
- 연계·협력 사업(예시)

▷ 남북 미래교육 발전을 위한 공동 학술회의

- 북측 참가 정보기술·과학교육, 교수법 혁신 등 미래교육 분야 학술회의
- 북측 교육전문가 및 교육당국과 연계한 남·북·제3국 활용 학술회의
- 학술회의 기간 중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논의 진행

▷ 서울-평양 교육기관 상호탐방 및 생태·환경 공동체험

- 평양/서울 교사양성대학 방문 및 강연, 교사양성과정 토론
- 서울-평양 주요 생태환경 교육 장소 탐방 및 의의 공유

▷ 남북 학생 간 문화·예술·스포츠 활동 교류

- 남북 청소년 음악제, 오케스트라단 상호 초청 공연 등 문화예술 교류
- 체육회 및 유관기관 협력 다양한 스포츠 분야 교류
- 남북 성인 스포츠 교류 재개 시 협업을 통한 공동 추진

▷ 북한 학교, 학생 등 대상 교육 분야 인도적 지원

- 학생 의식주, 보건, 건강, 교육환경 개선 등 지원·협력 사업

▷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사업 예산: 금200,000천원(금이억원)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38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5. 기금의 설치·운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의2(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재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4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 2019. 7. 18.] [서울특별시조례 제7214호, 2019. 7. 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일 기반을 조성하고 한반도 평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 및 학예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전개하는 각종 교류와 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과 남북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사업의 기본 원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남북 간 왕래·접촉 등의 일반원칙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청과 북한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에 관한 교류협력
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
3.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남북교육교류협력정책

제6조(협력사업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
2. 협력사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
3.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
5. 협력사업 추진과 관련한 재원조달 방법
6.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체계 구축과 지원)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각급 학교와 서울특별시, 자치구,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법인 및 단체 등과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② 교육감은 관내 소재하고 있는 남북교육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제8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및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
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놓아야 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4장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제14조(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설치와 자원 조성) ① 교육청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기금의 자원은 교육청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그 밖에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제1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제5조에서 정한 협력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3.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의 지원

제16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따른다.

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남북교육교류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

으로 하고,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 장학관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기금을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계획 및 사용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기금을 사용하는 자가 해당 기금을 고유 목적 외에 사용한 때에는 지원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의 존속기한) 교육감이 기금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그 존속기한은 최초 설치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부교육감과 소관 부서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남북교육교류협력이나 통일교육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2. 기금 운용 및 관리의 전문성을 가진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심의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 본인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2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1.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2.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전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사업계획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업무 담당부서의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회의 일시와 장소,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및 의결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3조(포상) 교육감은 협력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큰 공무원, 학생, 학교 등에 포상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7214호,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